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보험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 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 업무가 피보험자 업무에서 실업급여 관련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직확인서 미제출 과태료를 조정하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동일·관련 사업주에 대한 지급제외 규정을 변경하여 지원금 지급제도를 개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9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 제정에 따라 일학습병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급여 반복 부정 수급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히 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금액 기준 개선과 미납부 부정수금액 충당 절차 등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신설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직확인서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7조, 제61조 등)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에 따라 이직확인서 관련 업무가 피보험자 업무에서 실업급여 관련 업

무로 변경, 업무처리 주체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고, 이직확인서 미제출 과태료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미신고에 비해 과도한 측면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감액하고자 함
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동일·관련 사업주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 변경(안 제24조)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만 동일·관련 사업주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일학습병행 지원근거 마련(안 제41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9.8.27. 법률 제정, '20.8.28. 시행예정)을 계기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도 지원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명확화(안 제80조의2, 별표2의2 신설)

부정수급 예방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정지 횟수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차등화하여 마련하고자 함

마.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금액 기준 명확화(안 제81조 제1항·제2항)
구직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관련 조항 중 '구직급여 상당 금액'에서 '구직급여의 2배 또는 5배로' 추가징수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함

바. 미납부 부정수급액 충당 절차 마련(안 제81조 제4항·제5항)
지급받을 구직급여 1/10을 미납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되,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1/10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미납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기 이전에 반드시 수급자 의견 청취 및 충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사.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위한 자료요청 범위 신설

「고용보험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 제110조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를 “신고하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6항제3호 본문 중 “이직”을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 훈련비(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

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제1항제5호나목에 한정한다)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 숙식비 및 훈련지원금 등을 합한 금액 제6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제한 기간)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또는 5배 이하”로, “법 제62조제2항”을 “법 제6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을 “구직급여액의 2배 또는 5배 이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제2항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구직급여가 있거나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 있는 자에게 법 제44조에 따라 지급할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구직급여에 1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반환받아야 할 구직급여 또는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에 충당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서면으로 10분의 1을 넘는 금액의 충당에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충당을 하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당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장에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2(제공요청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1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등록 자료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5.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료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7.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8.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등에 관한 자료
9.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의 가입에 관한 자료
10.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
1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1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
1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및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확정 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소득자료,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 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자

자료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자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료
 17.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자료
 18. 「의료법」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에 관한 자료
 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등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해고, 퇴직 및 고용계약의 중요한 변경 내용 등에 관한 자료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자료
 21.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관련 자료
 2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자료
 2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4.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2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정보
 26. 그 밖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에 관한 자료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근로참여자에 관한 자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제145조제1항제14호 중 “사무처리”를 “사무처리 또는 법 제42조 및 제43조의 이직확인서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사무 처리”를 “사무처리 또는 법 제42조 및 제43조의 이직확인서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사무처리”를 “사무처리 또는 법 제42조 및 제43조의 이직확인서 업무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법 제15조 및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15조 및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145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42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	법 제118조			

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1) 발급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으로 발급하여 준 경우	제1항제2호	10만원 100만원	20만원 200만원	30만원 300만원
다. 법 제43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 발급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으로 발급하여 준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3호	10만원 100만원	20만원 200만원	30만원 300만원

부 칙

제1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41조, 제61조, 제80조의2, 제81조, 제142조의2, 제145조, 제145조의2, 별표2의2, 별표3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적용례)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일학습병행 과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표 2의2]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제한 기간

(제80조의2 관련)

구분		지급제한 기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	3회	1년
	4회	2년
	5회	3년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임금지급명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직확인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여 이직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자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① ~ ⑤ (생략) ⑥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 --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2. (현행과 같음) 3. -----
--	--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4. ~ 5. (생략)

⑦ 삭제

⑧ (생략)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①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

----- 이직
----- 이직
(해당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 -----
-----.

4. ~ 5.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①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 훈련비(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제1항제5호나목에 한정한다)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제1항제5호나목에 한정한다)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 숙식비 및 훈련지원금 등을 합한 금액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라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직한 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반환이나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령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 ----- 구직급여액의 2배 또는 5배 이하 ----- ----- -----.
④ (생략) <신설>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제한기간)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제한기간)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③ (생략)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제2항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구직급여가 있거나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 있는 자에게 법 제44조에 따라 지급할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구직급여에 1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반환받아야 할 구직급여 또는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에 충당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서면으로 10분의 1을 넘는 금액의 충당에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한다.
제81조(구직급여의 반환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1조나 법 제62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나 구직급여의 반환 및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제81조(구직급여의 반환 등) ①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또는 5배 이하 ----- ---법 제62조제3항----- -----		<신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

<신 설>

에 따라 충당을 하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당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2조의2(제공요청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1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5.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료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7.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8.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등에 관한 자료
9.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의 가입에 관한 자료
10.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
1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1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
1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

사항증명서,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및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확정 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소득자료,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가입자 자료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자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료

17.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자료

18. 「의료법」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에 관한 자료

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등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해고, 퇴직 및 고용계약의 중요한 변경 내용에 관한 자료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자료

21.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관련 자료

2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자료

2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4.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2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정보

26. 그 밖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에 관한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근로참여자에 관한 자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삭제

4. ~ 13. (생략)

14.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와 조사 결과 통지

16.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

-----.

4. ~ 13. (현행과 같음)

14. -----

----- 사무처리 또는 법 제42조 및 제43조의 이직확인서 업무-----

15. -----

----- 사무처리 또는 법 제42조 및 제43조의 이직확인서 업무-----

16. -----

----- 사무처리 또는 법 제42조 및 제43조의

다)	<u>이직확인서 업무 처리</u> -----
	--
17. · 18. (생 략)	17. · 18. (현행과 같음)
19.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 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u>법 제15조 및 제16조에</u>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19. ----- ----- -- <u>법 제15조</u> ----- ----- ---
20. ~ 26. (생 략)	20. ~ 2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직 확인서의 수리</u>	<u><삭 제></u>
2의2. ~ 7. (생 략)	2의2. ~ 7. (현행과 같음)
8.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 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u>법 제15조 및 제16조에</u>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8. ----- ----- -- <u>법 제15조</u> ----- ----- ---
8의2. ~ 12. (생 략)	8의2. ~ 12.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 업무를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 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①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16조에 따른 피보험자 의 이직확인에 관한 사무</u>	<u><삭 제></u>
4. ~ 25. (생 략)	4. ~ 2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7